

## 수출입통관제도

- 제 1 절 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 의제 및 통관의 개념
- 제 2 절 관세의 수입제세산출방법 (과세요건)
- 제 3 절 관세납부방법
- 제 4 절 관세의 감면제도
- 제 5 절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
- 제 6 절 체화물품의 처리
- 제 7 절 병행수입제도
- 제 8 절 납부세액의 정정 및 가산세 등
- 제 9 절 유통이력관리
- 제10절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 제1절

## 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 의제 및 통관의 개념

## 1. 관세의 개요

관세(關稅)는 Tariff 혹은 Customs duty라고 하며,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수출·반송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품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제 및 통관의 개념

## (1) 수입의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 ☞ 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241조제 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워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②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④ 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2)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 내국물품

'내국물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3)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다.

#### (4) 수출입의 의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

#### 가) 수입의 의제

-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 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⑤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 (5) 통관의 개념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다.

## ☞ 수출입의 금지 등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 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가, 수출통관

## 1. 개요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 2. 수출통관의 절차

## (1)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화주에게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한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수출신고서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의 수출 요건 구비서류(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②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 ④ 수출통과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이다.

## ☞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 ① 수출신고서(EDI 신고)
-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 (2) 물품검사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수출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수출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 ①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 ②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 ③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전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 수출신고필증교부

-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한다.
- 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9]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세법 제3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수<del>출물품</del> 선적이행 관리

- ①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 ②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 (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및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수출신고의 정정, 취하 및 각하

## (1)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항부호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정정제외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수출신고의 취하

- ①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②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 (3) 수출신고 각하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②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 신고건으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 4. 특수형태의 수출

#### (1) 선상수출

## 가) 신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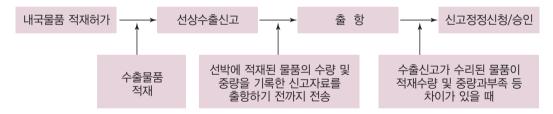
- 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 및 광산물 등)
- ②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예: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 나) 신고시기

출항전까지 출항지 세관에 신고. 다만, 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 세관 근무 시간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

-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 ②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
- ③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다)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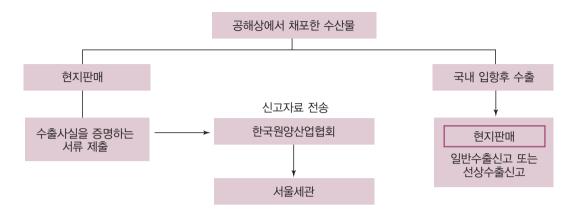
#### (2)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어패류를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 ☞ 신고절차



## (4)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시에 수량확정이 곤란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 ① 가스. 액체. 전기
- ②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 ③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 ④ 전자상거래, 위탁판매 수출물품

## 5.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신고

#### (1) 개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가소화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의미한 (2014 7 30 신설)

#### (2) 대상 및 요건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 ①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관에 신고한 업체가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 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간이통관 대상범위로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됨.

## (3) 특징

- ①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 → 37개) 항공편명. L/C번호, 송품장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 ② 소액.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기능 도입 기존의 수출품목 건별로 수출신고를 직접 입력하던 것을 수출품목 50~100건의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화하여 등록
- ③ 구매자 부호 제출 생략 고정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시 매번 등록하여야 하는 구매자 부호는 제출 생략

## (4) 효과

## ① 관세환급

중소기업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통해 관세환급이 가능함

####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③ 구매확인서 등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매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납품업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실적도 인정됨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	저리	기간 : 즉	ΛI
XXXXXXXXXX	XX	_	6세관	. 과 999-99					. –	9C/S구분 X	
			<b>-</b>	⑩거래구	분 XX	①종류	Х		①결제	l방법 XX	
			구문 X	①목적국 XXXXXXXX				XXXXX			
XXXXXXXXXX								자			1
XXXXXX		(:	소재지)	<b>①</b> 운송형	태 XX X	XXX	20	)검사희망	b일 YY	YY/MM/DD	
9-99999				②BHANN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L' '	②L/C번호	XXXXXXXX	XXXXXXXXXXXX	23	)물품상E	Н Х		
	산업	단지부호 XX	X	24사전임	시개청통	코여부 X	25	한송 사	유 XX	(	
	XXXXXXXXX	х Д					수출화	주, 2:	제조자	ł)	
 반수: 999/9	99)		<u>/                                    </u>	DE	- A						
				29상표명	XXXXXXXX	XXXXXXXXXXX					
	1	(3)	)성분	TU	32)수량			③단가(XXX)		왜금액(XXX)	
XXXXXXXXXXXXX 모델·규격 따라 세로	XXXXXXXXXXXXI I의 갯수 ! 길이 가변적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 xxxxxxxx	999	,999,999,999(XXX)		9,999,999	,999.99	999,9	99,999.99
1999 36순종	중량	999,999,999,9	999(XX)	30수량	999,999,999,999(XX)		❸신고가격(F0B)		OB)		<b>999,999</b> 9,999,999
XXX @수	입신고번호	XXXXX-XX-X	XXXXXX-X	(XXX)	X) ④원산지 XX-X-X		④포장갯수(종류)		<b></b> ₽)	999,999(XX)	
9(XX) <b>솅총</b>	포장갯수	999	,999 (XX)	쏈총신고가격 (F0B)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9				
9,999,999	48보험료(	(₩) 99	99,999,99	9,999	49결제금	XXX-XXX-999,999,999,999,99			9		
	XXXXXXXX	XXXXXXXXX		Х	⑤컨테C	미너번호	/	XXX	XXXXXX	XX	Х
			52세관기	TILEL		/	1		1		
- ベー××>ベードー(× - ベンコー)) - >>>>>>= コーニード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조 M 관 과 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A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나. 수입통관

## 1. 개요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수입 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였다.

## 2. 수입통관절차

## (1) 출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2) 입항

- ① 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 House B/L단위 적하목록 입수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공 주체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 ② 세관은 적하목록번호와 B/L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화물의 재고를 추적관리한다.

#### (3) 하선신고 및 하선작업

- ① 운항선사는 하선 전에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
- ②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부두내 CY(CFS)는 물론 부두밖 보세장치장(ODCY)까지 가능
  → 부두에서 ODCY까지의 화물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 ③ 종래의 하선작업 완료보고를 폐지하고 본선 하역후 선사 또는 검수회사가 제출하는 하선결과 이상보고로 대체
- ④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하역 즉시 부두에서 반출

## (4)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 가)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등의 장소간에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나) 보세구역 외 장치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18,000원의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② 다량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③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 ④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등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⑤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물품
- ⑥ 보세구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⑦ 자가공장 및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등의 물품
- ⑧ 기타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보세구역장치

#### ① 지정보세구역 중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 ② 특허보세구역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창고		내국물품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ul><li>④ 비축물품</li><li>⑤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히 정하는 물품</li></ul>	여 관세청장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				
	기타 특허보세구역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 ③ 종합보세구역: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유치 및 처분
  - ¬. 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한다
  - 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경쟁입찰 3회)
     또는 위탁판매(예외적) → 경매 또는 수의계약 → 위탁판매」방법을 채택. 특히, 매각초기
     단계에 위탁판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 (5) 장치확인

- ①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에 한한다.

#### (6) 수입신고

#### ① 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 ② 신고세관

- 그.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 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ㄷ.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 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 2.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입신고의 시기

- 진칭 :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입항전신고 또는 출항전신고)할수 있다.
- ㄴ.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의 비교

구분	!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신고시	[7]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 기의 경우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 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 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하선[기] 신고) 전	입항 후 당해 물품 이 반입 될 보세 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대상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 일본 · 중국 · 대만 · 홍콩 지역에서 선박으로 수입되 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관할세관	입항예정지 관할세관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싱 통보시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	검사 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 후	수입신고 후	
시기	검사 대상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 (7) 심사

- 가) 신고서 처리방법
- ① 심사자는 통관시스템의 검사정보 등 통관심사 및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과장(주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주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ㄱ. 물품검사 및 심사
  - ㄴ. 심사
  - ㄷ. 전자통관심사
- ② 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처리방법을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 · 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심사방법

- ①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신고서를 수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③ 부석의뢰 필요성 유무
- ④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 ⑤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⑥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⑦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 ⑧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및 법 제 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⑨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 ⑩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 · 확인
- ⑪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 ⑫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B/L분할신고 된 물품이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 ③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 (4) 기타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물품 검사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⑤ 「국세징수법」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⑥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라) 사전세액 심사대상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다음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①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과태료 · 과징금 · 수수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8) 물품검사

#### 가) 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 ㄱ 관세첫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ㄴ.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다.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나) 선상검사

출항전신고 · 입항전신고 또는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 다) 검사방법

-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ㄱ.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 ㄴ. 전량검사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 (9) 수입신고수리

#### 가) 신고수리

- ① 세관장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의하여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보고된 때) 신고수리한다.
- ②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 나) 신고서 처리기간

- ①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 적하목록 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 ②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당해 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 ③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도착일
- ④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 수입신고일
- ⑤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 수입신고일

## 다) 신고수리의 효력발생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하다.

## 라) 의무이행의요구

-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 ㄷ.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10) 관세 등의 제세납부

- 가) 수입제세 산출방법
- ① 관세: 과세가격×관세율
  - ※ 과세가격=실제거래가격(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공제요소금액) ×과세환율
- ② 내국세
  -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
  - ㄴ. 주세 :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주정은 종량세: 주정의 수량(KL) × (57.000원+가산금액)

가산금액: 알콜도수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워 가산

- $c.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cdot 관세 \cdot 주세 \cdot 개별소비세 \cdot 교육세 \cdot 농특세 \cdot 교통세) <math> \times 10\%$
- 리.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times$  30%(단, 등유, 중유, 부탄 및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부생유류)는 15%)

교통세액 × 15%

주세액 × 10%(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ㅁ.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세액 × 20% 개별소비세액 × 10%

나) 가격신고, 신고납부, 수정신고, 경정, 세액의 보정 등 : 관세의 확정 참고

##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 ① 의의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신고수리 전 반출사유

- ㄱ.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 ㄴ. 조달사업관한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ㄷ.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ㄹ 품목부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③ 신고수리전 반출절차

- 기.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 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L.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제척기간 도래 전에 수입화주 또는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당해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의 효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며,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 수입신고 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

#### ① 의의

반복 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하여 기업생산활동의 원활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반출신고만으로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대상

- 기.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워부자재
- ㄴ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③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신고의 효과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경우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수입신고 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 ☞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제도

#### ① 의의

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 후에 불법 수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 ② 반입명령대상

- ㄱ. 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L.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드.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ㄹ.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③ 반입명령서의 송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물품의 반입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반입물품의 처리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이하 '반입의무자')에게 그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반입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관세법의 과오납금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 3.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거래를 총칭하여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라 한다. 즉,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정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결제하는 상거래방식을 의미한다.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

#### (2) 전자상거래의 유형

#### ① 직접거래형태(해외직구)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 ② 배송/결제대행형 거래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

#### ③ 구매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 (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④ 수입쇼핑몰형 거래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 ⑤ 전자상거래의 수입화주

직접거래형, 배송/결제대행형 및 구매대행형 거래의 경우 국내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며,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가 된다.

## (3) 수입통관 형태

## 목록통관

수입신고서 대신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으로 해외 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 발송시 이런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가 필요없다.

#### ② 간이 수입신고

간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종 필수 제출서류는 생략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개인 수입자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2014.8.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하거나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개인용) 작성 후 권역별 본부세관에 방문 또는 FAX로 신청(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할 수 있다.

#### ④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물품일 경우에도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으로 보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등의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밖에 세관장확인대상품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4) 특별통관대상 업체

## ① 개요

특별통관대상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이러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개장검사가 생략되며, 전산으로 선별되건만을 검사한다.

## ②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7. 수입물품과 대금의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 등 관련 운영시스템을 세관공무원이 확인가능하도록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ㄴ.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 다.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통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리.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ㅁ 통과 등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 ㅂ.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수입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운영하여야 한다.(식품 등 취급업체에 한한다)
- 人 반품·교환·환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이버물에 공시하여야 한다.
- 0. 고객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수 없다.

- \*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

ㄱ. 전자상거래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위조품 등)의 수입 또는 수입대행
- \*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 □.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법 제1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 ¬.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 이터넷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였는지
  - \* 주소 · 대표자 · 상호 등을 변경하였는지
  - \*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 \*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 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다
- 다.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위반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 입 신 고 필 증

※ 처리기간 : 3일

		•					<i>7</i> *	지터기산 · 3월		
①신고번호 999	999-99-9999999-9	인신고일 YYYY,	③세관.과 /MM/DD	999-99	입항일	YYYY/MM/I	⑦전지 DDXXXXXX	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XXXXXXXXXXXXXXX		
④B/L(AWB)번호	,,,,,,,,,,,,,,,,,,,,,,,,,,,,,,,,,,,,,,,	⑤화물관리		mananana o	8반일		0 - 1 - 1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YY	XXXXXXXXXXV-9		I/MM/YYYY	_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0000 V)	⑤통관계획 YYYYYY	X XXXXXXXXXX	9원산지증명서 800 v	②)총중			
① 남세의무자 (XX)				16신고구분		<u>유무 X</u> ⑩가격신고서	_	9,999,999,999 XX <sup>프</sup> 장갯수		
	XXXXXXXXXXXXXXXXXXX				XXXXXXXX	의기독단고지 유무 X	6951	99,999,999 XX		
(상호)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		①거래구분		_ <u>ㅠㅜ^</u> 33국내도착항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			
	(XXXXXXXXX	WWW.WWW.	AAA	18종류		5)적출국 XX		XXXXXXXXXX		
⑬운송주선인 XXXX		XXXXXXXX (99	999999)		XXXXXXXXX	%선기명 XXXX	XXXXXXXX	XXXXXXXXX XX		
⑭해외거래처 XXXX				20MASTER B.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은수기관부호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_ @±	デノゼテタ ハハハ		
※ 금사(반입)장소 ● 품명·규격(란변	99999999-XXXX 건호/총란수 : 999/	. <u>XXXXXX (XXXX</u> /999)	<u>(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u>	XXXXXXXXXXX	()					
	그오/동단구 · 999/ (XXXXXXXXXXXXXXXXX	,	/vvvvvvvvvvvvvvv	YYY	32상 표 XXX	XXXXXXXXXXXXXX	/YYYYYYY	/VVVVVVVVVVVVV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	1/1/1/1/1/1///////////////////////////	WWWWWWW		
<u>33</u> 모델·규격		.^^^^ 34성분		35수량	ΛΛ/	36 ピ가(XXX)		37금액(XXX)		
			XXXXXXXXXXXX		99,999,9999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	9,98	99, 999. 9999A.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	9,99	99,999.9999X	XX 9,999,999	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								
≫세번 부호	9999.99–9999	40)순중량	9,999,999,9	99,999.9 XX	∰C/S 검사	X XXXXXXXX	XXXXXX	45)사후확인기관		
③ 과세가격(CIF)	\$999,999,999,999	④ 수 량	9,999	,999,999 XX	∰검사변경	X XXXXXXXX	XX	999, 999, 999		
<b>愛班和バー(CIF)</b>	₩999,999,999,999	42)환급물량	9,999,999	,999.999 XX	46원산지	XX-X-X-XX	④ 특수서	1액 99,999,999.99		
	9-999-99-99	9-9999999	9-999-99-99	9-99999999	9-999-99-	99-9999999	9-999	9-99-99-9999999		
《용수입요건확인	(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발급서류명)	9-999-99-99 (XXXXXXXXXXX		9-999-99-99 (XXXXXXXXXXXX			99-99999999 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49세종 50세율(-		⑩감면율	52세액		분납부호	감면9		* 내국세종부호		
	9.99(XX XXXX) 999999999	9,999.99	999,999,999	),999 XXX	XXXXXXXXX	999,999,9	99,999			
9,999	9.99(XX XXXX)	9,999.99	999,999,999	,999 <sub>vv</sub>	XXXXXXXXX	999,999,999,999		XXXXXX		
	9.99(XX XXXX) 9.99(XX XXXX)	9,999.99 9,999.99	999,999,999	,999	XXXXXXXXX	999,999,9				
VY 5,550	9.99(XX XXXX)	9,999.99	999,999,999	,,,,,,,,,,,,,,,,,,,,,,,,,,,,,,,,,,,,,,,	XXXXXXXXX	999,999,9				
ΛΛ ,				XXX	XXXXXXXXX	1 ' '				
ᡚ결제금액(인도조금	건-통화종류-금액-결	제방법)	XXX-X	XX-999,999,	999,999-XX	56환	율	99,999.9999		
@초기니기건	\$999,999,999,999	57) 운임	999,999,999,999	59가산금액	999,999,99	99,999 <mark>64)납부</mark> 서	번호  99	99-99-99-9-999999-9		
55)총과세가격	\\$999,999,999,999	58보험료	999,999,999,999	⑩공제금액	999,999,99	99,99965총부가	가치세과Ŧ	£ 999,999,999,999		
⑥세 종	⑫세 액	※신고인기자			66세관기재린		1			
관 세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특 소 세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교 통 세	999,999,999,999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XXXX		
주 세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	aaaaaaa 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교 육 세	999,999,999,999	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XXXX		
농 특 세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IAAAAA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aaaaaaa 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부 가 세	999,999,999,999		VVV VVVVV VVVV		XXXXXXXXXXX	MA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XX		
신고지연기산세	999,999,999,999	┣ 선화면호 ┣ 이메일주/	XXX-XXXXXX XXXX	X	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Or			
미신고기산세	999,999,999,999	3 3 3 5 7 -								
⑥총세액합계	999,999,999,999	መ담당자 XX	XXXXXXXXXX 9999 세과·고	99 <b>68접=</b> }: 999-99		/MM/DD,HH:MM 99999-99-999	<b>69수리</b>	일자 YYYY/MM/DD Page: 999/999		

#### 발 행 번 호 : 99999999999(YYYY.MM.DD)

- \*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본 선고별등은 발행 후 세관점사 등에 따라 정칭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인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정 전사동관시스템 (<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다. 반송물품통관

## 1. 의의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2. 반송물품의 범위 및 요건

## (1) 단순반송물품

- ① 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 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 ②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 ③ 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 ④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 〈구비서류〉

- ① 당해물품의 적하목록과 최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 ②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③ 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 (2) 통관보류물품

- ① 외국수출자와 당해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 ②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 〈구비서류〉

- ① 수입신고취하승인서
-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

## (3) 위탁가공물품

-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위탁가공 수출입인정을 받아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반입된 물품일 것
- ② 당초 위탁가공수출입 인정기관에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를 득한 물품일 것

#### 〈구비서류〉

- ① 최초의 수출입 인정서류
- ② 수출계약등 증빙서류

## (4) 중계무역물품

## (5) 보세창고반입물품

단순반송 물품의 경우와 동일

#### 〈구비서류〉

- ① 최초의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 (6)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등

#### 〈구비서류〉

수출승인서(해당물품)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반입

#### 〈구비서류〉

- ① 수입승인서
-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 ③ 선하증권 사본
- ④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나) 국내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반입

## 〈구비서류〉

- ① 국내거래 관련서류(내국신용장, 매매계약서 등)
-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 ③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동 물품은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가 있으면 년1회 이상 재고조사가 실시된다.

## 3. 반송물품에 대한 관리

- ① 보세운송신고: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서 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적재확인 :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적재 명령을 하여야 한다.

## 4. 반송의 절차

반송요건 해당여부 검토  $\rightarrow$  반송신고  $\rightarrow$  물품검사  $\rightarrow$  통관심사  $\rightarrow$  반송신고수리  $\rightarrow$  선적확인

관세청								. ,	_	_						
KOREA CUSTOM: SERVICE	7	자동간시스템 <b>- 1</b>	A55			민	t =	등 신	<u>.                                    </u>	7	И	», ī	H리기간	ᆞᆞᄌ	λ1	
										ı		* /	(디기간 	. 7	/\I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관.과 999-9	99	(1	인신고일자 YYYY/MM/DD		®신고구 X	_	9C/S구분 X	
②수 출 대 행 X	ł xxxx	XXXXXX	XXXXXXX	XXXXXX	(XXXX					⑩거래	구분 XX	①종류	Х	(12 년	데방법	XX
(통관고유부효	) XXXX	XXXX-9	-99-9-9	9-9		:	수출자구	·분 X		[3]목적	국 XXXXXXX	① ③ 적 재 형			박회사 XXX '공사)	XXXX
<b>수 출 화</b> 즉 (통관고유부호					XXXX					⑥선박 XXXX	명(항공편명) XXXX	①출항여 XXXXXX		(8적)	대예정보세 XXXXX	 구역
								⑨운송형태 XX XXX 20검사희망					YYYY/MM/D	D		
•	(대표자) 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20)물품	·소재지 XX 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	
③제 조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조장스		,,,,,,,,,,,,,,,,,,,,,,,,,,,,,,,,,,,,,,,			업단지부	호 XX	X			24)사전	임시개청통보	여부 X	25반송	사유	XX	
④구 매 : (구매자부호		XXXXXXX	(XXXXXX) X	(XXXXXX	XXX			Y	C		신청인 X (1: 간이정액환급		 자/수출화	주, 2	:제조자)	
 품명 · 규격 (ē	반번호/	총란수:	999/99	9)		K	C	K		À						
② 품 명 X	(XXXXXX	XXXXXX	XXXXXXX	XXXXXX	(XXXXXXXXX	XXXXXX	XXXXXX)	(X	- M	AL TT ID	₹ XXXXXXXXXXX	/vvvvvvv	/v			
※거래품명 XX	(XXXXXX	XXXXXX	XXXXXXX	XXXXXX	(XXXXXXXXX	XXXXXX	XXXXXX	ΧX		3	I	^^^^^	\^ 			
30모델·규격 XXXXXXXXXXX						c	Е 1	③1성분	6	Н	322수량		③단가(X	(XX)	③상금액(X)	(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 (XXXXXXX) (XXXXXXXXXXXXXXXXXXX	모델· 따라 서	규격의  로길이 XXXXXXXX	갯수 및 · 가변적』 ⟨XXXXXXXXXX	길이에 XXXXXXX	XX XX XX	XXXXXXXX XXXXXXXX XXXXXXXXX XX	XXXX	XXXXX		99,999(XXX)	,,,,,,	99,999.99	999,999	
③ 세번부호	999	99.99-9	1999	36순중	량	999,	999,999	,999(XX)	39수	수량 999,999,999,999(XX)			(FOB) <b>ሜ</b> 신고가격(FOB)		\$999,99 ₩999,9	•
39송품장번호	XX	XXXXXX	XXX	40수입·	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X(XXX	(X) ④원산지 XX-X-X			@포장갯수(종류)		999,99	99(XX)
④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 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b>∯</b> 총중량	999,	999,999	9(XX)	46총포	장갯수		999	9,999 (XX)	)	⑥총신고가격 (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			
47)운임(₩)		9:	99,999,9	99	48 보험료(	₩)		999,999,9	99,99	999 49결제금액			XXX-XXX-999,99		99,999,999,999	
⑤수입화물관리	번호				XXXXXXX	XXXXXXXXXXX				Х	⑤컨테이너	XXXXXXXXXX		CXX	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신고인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기간 YYYY/MI	M//DD ≒	루터 YY	YY/MM//	DD 까지	9	y ¬ NI =	리무기한 기구기한				, MANAA	(AAAAAA)	& C 11 T	7 2 7	YYYY/MM Page: 9	